

2017학년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선발요강
-「나」군-

2016. 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 목 차 >

1.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1
2. 입학전형일정('나'군)	1
3. 입학정원과 전형별 모집인원	3
4. 지원자격	4
5. 전형방법	8
6. 제출서류	12
7. 이의신청	14
8. 지원자 유의사항	14

1.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 (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흥익인간, 교육구국, 자유·정의·진리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지도자적 우수 전문 법조인과 법학자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른다.
- 가. 인간과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품성, 개인적, 집단적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올바른 정책판단과 제도개선을 선도하는 학문적 지식과 소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 나. 사회적 배려계층이 법조인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 다. 이러한 선발 기준과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된 본교의 제규정에 의한다.

-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자세한 공정성 확보방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시한다.

2. 입학전형일정('나'군)

구 분	기 간	장 소	참고
원서접수	10.4(화) 09:00~10.7(금) 18:00	(주)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가.
서류 제출	등기우편/ 택배 10.4(화)~10.10(월) 17:00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담당자 앞	나.
	직접 방문제출 10.7(금)~10.10(월) 10:00~17:00 단, 10.8(토)는 접수하지 아니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1.9(수)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korea.ac.kr)	다.
구술면접	11.19(토)	고려대학교 인문계캠퍼스	라.
최종 합격자 발표	12.9(금)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마.
등록	2017.1.2(월)~1.3(화) (예정)	하나은행 전국지점 (은행영업시간)	바.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추후 공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사.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 전형료 결제 등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철회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지원 자격 미달자, 지원포기자, 구술면접시험 결시자에게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접수시 사진(3×4cm 규격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용)을 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 입학지원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한다.
- 입학전형기간 중 서류 불비, 서류 미비, 안내사항 공지 및 추가합격 등의 경우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본인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누락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한다.
- 입학지원서 접수 기간 중 전형구분(일반/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지원서 항목은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여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지원서와 수험표를 출력하여 입학지원서는 다른 제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고, 수험표는 지원자가 보관하여 구술면접 시 지참한다.
- 입학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전형료 : 250,000원(일반전형) / 50,000원(특별전형. 단, 특별전형 지원자 중 경제적 배려 유형의 경우 접수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를 면제한다)
- 서류전형 불합격자에게는 전형료 중 구술면접 전형료(50,000원)를 환불한다(특별전형의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서류제출

- 아래 **6. 제출서류** 안내부분을 숙지하고 이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제출 서류의 우측 상단에 반드시 입학지원서상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한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홈페이지(<http://lawschool.korea.ac.kr>)에 공지하며,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라. 구술면접

- 구술면접 안내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다.

바. 등록

- 합격 이후 등록 및 기타 안내는 홈페이지에 따른다.

사.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개별통지를 통해 등록의사 확인 후 추가합격자를 선발한다.

3. 입학정원과 전형별 모집인원

입학정원	전형유형		전형별 모집인원
'나'군 120명* (편제정원 기준)	일반전형		114명 이내
	특별전형	(1) 신체적 배려 (2) 경제적 배려 (3) 사회적 배려	6 명 이상

*2017학년도 '정원 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만일 선발할 경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한다. * 2016학년도 결원인원의 확정일: 2017. 2. 28(화)

- (1)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1개 전형만 선택하여 지원한다.

가. 특별전형에 응시한 지원자 중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불합격한 지원자는 일반전형에서 합격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동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학사 이외의 학위소지자(비법학사) 및 고려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자(타 대학졸업자)를 각각 입학정원의 1/3 이상 선발한다.

가. 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비법학사는 비법학사로, 비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법학사는 법학사로 지원해야 한다.

나. 법학을 복수(이중)전공으로 이수한 비법학사 또는 비법학을 복수(이중)전공으로 이수한 법학사는 본인의 선택으로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어느 한 곳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 고려대학교를 포함한 두 곳 이상의 대학(교)에서 모두 학사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는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라.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 대학을 기준으로 타 대학졸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 외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 해당 여부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관련내용을 심의·결정한다.

- (3) 특별전형 선발 인원 중 30%는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는 경제적 배려대상 지원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수학능력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그 결원만큼은 경제적 배려대상 유형과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4. 지원자격

(1) 일반전형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취득예정자[2017년 2월 말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3월 말까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서 아래의 성적을 취득한 자

공인영어성적에 따른 지원최저기준

TOEFL(IBT)	90점 이상
TEPS	627점 이상
IELTS(Academic Module)	6등급 이상

- 해외대학 출신 및 제 2외국어가 우수한 지원자도 영어인증의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원서접수 마감일(2016. 10. 7.)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 한 것이어야 한다. (TEPS의 경우 제191회(2014.10.19. 시행) ~ 제222회(2016.9.24. 시행) 정기 시험이 유효함)

(2) 특별전형

아래 공통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각각의 특별전형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가. 공통 기본요건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취득예정자[2017년 2월 말까지(일본 등 3월에 졸업하는 외국대학 졸업자는 3월 말까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취득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자

공인영어성적에 따른 지원최저기준

TOEFL(IBT)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TEPS	공인영어성적 제출 (성적제한 없음)
IELTS(Academic Module)	

-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원서접수 마감일(2016. 10. 7.)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TEPS의 경우 제191회(2014.10.19. 시행) ~ 제222회(2016.9.24. 시행) 정기 시험이 유효함)

나. 특별전형 유형별 조건 및 구비서류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6급 이상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원본(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원본(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경제적 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가구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사업에 참여 차상위가구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해당 증명서 원본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장의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가구 또는 자활사업 참여 차상 위가구 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자기확인서(소정양식) 1부 ○ 본인의 해당 증명서 원본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 군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장의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제출 ▶ 단,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로서 위 확인서 같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자기확인서(소정양식) 1부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타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농·어촌지역 출신자-「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출업생은 제외)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증명서(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기타 보훈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격 확인원 등) 1부 (등급,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u>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u>」(공통, 아래 참조)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교육과정 출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u>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u>」(공통, 아래 참조)
	아동복지시설 재원자-「아동복지법」 제50조와 동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학력인정확인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u>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u>」(공통, 아래 참조) ○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 사실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p>지시설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재원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p> <p>다문화가족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p> <p>한부모가족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 보호대상자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1부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 부/모 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담당자 연락처 기재) ○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 아래 참조)
참조	<p>*사회적 배려 유형의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p> <p>본인, 배우자 및 부모 전부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의 3배 미만, 본인, 배우자 및 부모 전부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원 이하</p> <p>*가구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9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로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p>	<p>*사회적 배려 유형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증빙서류(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배우자, 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최근 3년)」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포함 가구원 전원의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 증명서(최근 3년) 또는 사실증명(납세사실 없는 자)」, 「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포함 가구원 전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최근 3년) 또는 사실증명(납부사실 없는 자)」 각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중 근로소득 있는 자의 경우, 최근 3년)」 및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본인·배우자 및 보호자 근로소득 없는 자의 경우, 최근 3년)」 각 1부 ○ 자기확인서(소정양식) 1부 <p>※ 「가족관계증명서」는 지원자 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받아 제출</p> <p>※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지원자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나머지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까지 각 1부 제출</p> <p>※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는 국세 포함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p> <p>※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생계, 주거를 같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빙서류 제출범위에서 제외할 경우는 그에 대한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p>

※ 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 유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졸업시까지(6학기 기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사회적 배려유형의 「경제적 여건 취약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

[2016년]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50%)에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값에 3배를 곱하여 기준을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16년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증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A \times 0.5$)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보험료 ($A \times 0.5 \times 0.0306 \times 3$)	74,580	126,987	164,277	201,567	238,857	276,147	313,436

※ 8인 이상 가구 기준 증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8인 가구: 7,641,095원)

[2014~2015년]

-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연도별 건강보험료율(예>2015년 6.07% 中 본인부담금 50% = 3.035%,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값에 3배를 곱하여 기준을 산정한다.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15년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위 : 원/월)

구 分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 \times 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 ($A \times 1.2 \times 0.03035 \times 3$)	67,443	114,837	148,560	182,283	216,003	249,726	283,449

※ 8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8인 가구: 2,902,892원)

< '14년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위 : 원/월)

구 分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20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 \times 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 ($A \times 1.2 \times 0.02995 \times 3$)	65,058	110,775	143,307	175,836	208,365	240,894	273,423

※ 8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2,837,627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기타 보훈관계 법령 교육지원 대상자

구분	유 공 자	유공자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	○	○	○
	애국지사	○	×	○	○
	전몰군경	×	○	○	×
	전상군경	○	×	○	×
	순직군경	×	○	○	×
	공상군경	○	×	○	×
	무공수훈자	○	×	○	×
	보국수훈자	○	×	○	×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	○	×	○	×
	4.19혁명사망자	×	○	○	×
	4.19혁명부상자	○	×	○	×
	4.19혁명공로자	○	×	○	×

	순직공무원	x	○	○	x
	공상공무원	○	x	○	x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x	○	○	x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x	○	x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x	○	x
6.18자유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x	○	x
	지원 순직군경	x	○	○	x
지원대상자	지원 순직공무원	x	○	○	x
	지원 공상군경	○	x	○	x
	지원 공상공무원	○	x	○	x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x	○	x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x	○	○	x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x	○	x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x	○	x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사망자	x	○	○	x
	특수임무부상자	○	x	○	x
	특수임무공로자	○	x	○	x

5. 전형방법

(1) 전형반영 요소, 배점 및 비율

전형형태	전형내용	배점
서류평가	• 학부성적	200점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단 법학적성시험(LEET) 논술은 P/F 평가	200점
	• 외국어능력	100점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가치관, 대학 입학 이후 학업사항, 미래비전 등 포함 서류 종합평가)	100점
	서류전형 총점	600점
구술면접	•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답변내용의 설득력을 통한 지원자의 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 표현의 정확성·적절성, 발표 태도	100점
	총점	700점

구분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 (LEET)	외국어능력	자기소개서	소계
반영점수	200점	200점	100점	100점	600점
명목반영률	33.33%	33.33%	16.67%	16.67%	100.00%
기본점수	160점	102점	93점	65점	420점
실질점수	40점	98점	7점	35점	180점
실질반영률	22.22%	54.44%	3.89%	19.45%	100.00%

※ 구술면접 포함 시 위 실질반영률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선발절차

가. 특별전형

- 서류평가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구술면접 대상자로 선정하며 서류평가와 구술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특별전형에서 불합격한 특별전형 지원자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영어성적 기준 등)에는 별도의 지원절차 없이 일반전형 지원자에 포함시켜 다시 평가한다. 단, 해당 지원자는 별도 절차를 통하여 일반전형 전형료와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일반전형

-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구술면접 대상자로 선정하며, 서류평가 성적과 구술면접 점수를 합산한 성적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3) 전형요소 및 환산방법

가. 서류전형

○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 지원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평가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다른 사항들에 대한 증빙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

○ 전공분야를 포함한 학부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지원자는 백분위로 환산된 학부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자가 제출한 백분위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기준표에 따라 반영된다.(별첨1 참고)
- 편입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최종재적학교의 성적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편입 전 대학(교)의 성적은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단, 편입 전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는 참고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 국문 또는 영문 외 외국어로 작성된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中國高等教育學歷查詢報告(Verification Report of Chin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영문 또는 중문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www.chsi.com.cn)
- 백분위성적으로 빨급할 수 없는 외국 소재 대학(교)의 성적증명서에 대한 백분위 환산 기준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 법학적성시험의 전형요소는 추리논증, 언어이해 영역과 ‘논술’을 대상으로 한다.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본원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해 총 200점 만점으로 하며, 이 중 추리논증 영역은 120점, 언어이해 영역은 80점으로 한다. 논술의 경우 P/F방식으로 평가하며 별도의 점수 배정은 없다.
- 추리논증 영역과 언어이해 영역의 환산기준표는 별첨2 참고.

○ 외국어능력

- 공인영어성적(TOEFL, TEPS, IELTS)으로 평가하되, 제 2 외국어의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를 감안한다.
- 공인 영어능력 및 제 2 외국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것이어야 한다(단, 프랑스어(DALF)와 같이 특정 등급취득 이후 재응시가 불가능한 형태의 시험인 경우 응시일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외국어능력은 본원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환산기준표는 별첨3 참고.

○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사회활동, 봉사활동 및 학업계획 등 포함)

- 자기소개서 영역은 지원자의 지원동기와 가치관, 고교 졸업 이후의 경험과 경력사항, 대학 입학 이후의 전공충실도 등 학업사항, 지원자의 미래 비전과 진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 학업 계획은 소정양식에 따라 자기학습과정 및 변호사자격 취득 후의 활동과 관련하여 실천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등은 소정양식에 안내된 주의사항에 따라 기재한다. 모든 활동사항은 유관기관장 등이 공인한 증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
- 자기소개서를 지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하거나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대필 등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실격 및 감점 등 평가 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문 기재내용 상에 지원자 본인의 성명을 밝히거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상에 특정이 가능한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및 직장명을 기재한 경우 실격, 합격취소,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사업, 범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 기재도 금지된다.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마련한 양식에 맞춰 기술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나. 구술면접

○ 개요 및 주의사항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이 구술면접에 응시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면접당일 휴대폰, 전자시계, MP3, PDA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소에 휴대할 수 없다.

○ 평가방법

-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답변내용의 설득력, 표현의 정확성·적절성, 발표 태도 등을 통하여 지원자의 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정성평가한다.
- 구술면접은 영어 등 외국어로 실시하지 않으며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4)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우선 순위
1차 서류전형	합격기준 동점자 발생한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시킴
모든 전형	1. 서류전형 총점
	2.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
	3. 구술면접 점수
	4. 서류전형 중 학부성적
	*이후 동점자 발생 시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6. 제출서류

(1) 기본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비고
1	입학지원서 1부	○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본을 제출함.
2	학사과정 이상 졸업(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	•졸업자의 성적증명서에 학위명, 학위번호가 명기된 경우 성적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함. •서류제출일 기준 2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졸업예정자에 한함).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中國高等教 育學曆查詢報告'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www.chsi.com.cn 学历网上查询 참고).
3	학사과정 이상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전학년 평균 성적을 기재하되, 졸업예정자는 2016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여름계절학기성적이 평균에 산입될 경우 계절학기 성적 포함) 평균성적이 기재되어야 함. •편입학의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대학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
4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LEET) 성적표 1부	○	○	•2016년에 실시한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만 인정함.
5	공인영어성적표 원본 1부	○	○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TOEFL(IBT), TEPS 또는 IELTS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TOEFL 점수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위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합격 후 TOEFL 성적 Score Reporting 하여야 함(기관번호: 7287).
6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11. 임의제출서류 목록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특별전형 지원 자격 증빙서류 일체	-	○	•특별전형 유형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page 특별전형 유형별 조건 및 구비서류표 참조).
8	대학원 재학(졸업)시 재학 ,수료 또는 졸업(예정)증명 서	△	△	•대학원에 재학, 수료하였거나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자의 성적증명서에 학위명, 학위번호가 명기된 경우 성적증명서로 갈음이 가능함.
9	대학원 재학(졸업)시 성적 증명서	△	△	•대학원에 재학, 수료하였거나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 성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10	학적조회 동의서 (소정양식) 1부	△	△	•해외 소재 대학 출신 지원자의 경우에 한하여 학적 조회 동의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11	임의제출서류 목록표	△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상의 소정 양식

	(소정양식)			•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2	제 2 외국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서류 원본 1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프랑스어(DALF) 시험과 같이 특정 등급취득 이후 재응시가 불가능한 형태의 시험일 경우 응시일자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제 2외국어 가산점 인정등급 <table border="1"> <thead> <tr> <th>독일어 Goethe-Zertifikat, TestDaf</th> <th>프랑스어 DALF</th> <th>스페인어 DELE</th> </tr> </thead> <tbody> <tr> <td>C1, C2 Test-Daf의 경우 각 영역 4등급 이상 또는 전영역 합계 16등급 이상</td> <td>C1, C2</td> <td>C1, C2</td> </tr> <tr> <th>러시아어 TORFL</th> <th>중국어 HSK</th> <th>일본어 JLPT</th> </tr> <tr> <td>3,4 단계</td> <td>新6급 총점 180점 이상</td> <td>N1 등급</td> </tr> </tbody> </table> <p>※기타 언어에 대한 평가는 상기 언어의 가산점 인정등급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짐(단, 원서접수 마감일(2016.10.7.)로부터 2년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함). ※가산점은 외국어능력 영역에 포함되어 평가됨.</p>	독일어 Goethe-Zertifikat, TestDaf	프랑스어 DALF	스페인어 DELE	C1, C2 Test-Daf의 경우 각 영역 4등급 이상 또는 전영역 합계 16등급 이상	C1, C2	C1, C2	러시아어 TORFL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3,4 단계	新6급 총점 180점 이상	N1 등급
독일어 Goethe-Zertifikat, TestDaf	프랑스어 DALF	스페인어 DELE														
C1, C2 Test-Daf의 경우 각 영역 4등급 이상 또는 전영역 합계 16등급 이상	C1, C2	C1, C2														
러시아어 TORFL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3,4 단계	新6급 총점 180점 이상	N1 등급														
13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 경력증명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11. 임의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 •고교 졸업 이후 해당자료만 제출 												
14	수상 및 자격취득 증빙자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에 한함(11. 임의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 •고교 졸업 이후 해당자료만 제출 												
15	기타 증빙자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11. 기타 서류 목록표에 기재). •고교 졸업 이후 해당자료만 제출 												

* ○: 필수제출자료, △: 해당자에 한함

(2) 특별전형 제출서류

-5page 특별전형 유형별 조건 및 구비서류표 참조

(3) 서류제출 관련 주의사항

- ※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 원본 서류와 함께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는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에 한하여 출신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Accreditation 등에 관한 증빙서류 및 소정의 학적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상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자료(해당기관의 확인 필)를 제출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한다.

- ※ 원본제출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제출 현장에서 원본대조 확인(원본대조필)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단, 직접 현장제출에 한함).
-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7. 이의신청

- (1) 구술면접과 관련하여 인적 오류나 편견에 의하여 절차상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원자는 구술면접이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사정원칙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8. 지원자 유의사항

*** 모든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지원 및 입학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제출서류가 지정한 일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지원 당시 학사학위취득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지원자는 2017. 3. 3(금) 이전까지 (단, 일본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는 2017. 3. 31(금) 이전) 졸업증명서를 입학전형 담당자에게 등기우편(택배 포함)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한다.
- (3) 최종 합격자에 한해, 징벌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학부(편입학시 전적대학 포함) 및 대학원 과정의 학적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해외소재 대학의 경우, 소정 양식의 확인서로 학적부 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 (4) 입학지원서 접수 당시 지원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물론, 접수 후 지원자격을 상실한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추후 지원자격을 갖추지 않음이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5)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나'군에 속하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지원하거나 2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등록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6) 지원자가 구술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심히 불량한 태도로 응시하는 경우 서류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실격 등 불이익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입학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기재, 입학원서 작성오류, 필수적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대리면접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기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에도 제한을 받는다.

- (7) 입학전형의 성적, 순위 및 평가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8)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 군복무 등 병역관련, 출산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 (9) 신입생선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제규정에 따른다.



원서접수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서류제출	등기우편 (택배 포함)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담당자 앞
	직접방문제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접수처
문의	Q&A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korea.ac.kr
	전화	02-3290-1428
	FAX	02-927-8819

<별첨1> 학부성적 환산표

백분위	합계	백분위	합계	백분위	합계
100%	200	93%	193	86%	182
99%	199	92%	192	85%	179
98%	198	91%	191	84%	176
97%	197	90%	190	83%	173
96%	196	89%	189	82%	169
95%	195	88%	188	81%	165
94%	194	87%	185	80% 이하	160

<별첨2> 법학적성시험(LEET) 환산표

백분위	추리논증	언어이해	백분위	추리논증	언어이해	백분위	추리논증	언어이해
100%	120	80	73%	110.4	73.55	46%	94.2	59.69
99%	119.7	79.8	72%	110	73.28	45%	93.2	58.69
98%	119.4	79.6	71%	109.6	73.01	44%	92.2	57.69
97%	119.1	79.4	70%	109.2	72.74	43%	91.2	56.69
96%	118.8	79.2	69%	108.8	72.47	42%	90.2	55.69
95%	118.5	79	68%	108.4	72.2	41%	89.2	54.69
94%	118.2	78.8	67%	108	71.93	40%	88.2	53.69
93%	117.9	78.6	66%	107.6	71.66	39%	87.2	52.69
92%	117.6	78.4	65%	107.2	71.39	38%	86.2	51.69
91%	117.3	78.2	64%	106.8	71.12	37%	85.2	50.69
90%	117	78	63%	106.4	70.85	36%	84.2	49.69
89%	116.7	77.8	62%	106	70.58	35%	83.2	48.69
88%	116.4	77.6	61%	105.6	70.31	34%	82.2	47.69
87%	116	77.33	60%	105.2	70.04	33%	81.2	46.69
86%	115.6	77.06	59%	104.8	69.77	32%	80.2	45.69
85%	115.2	76.79	58%	104.4	69.5	31%	79.2	44.69
84%	114.8	76.52	57%	104	69.23	30%	78.2	43.69
83%	114.4	76.25	56%	103.6	68.96	29%	77.2	42.69
82%	114	75.98	55%	103.2	68.69	28%	76.2	41.69
81%	113.6	75.71	54%	102.2	67.69	27%	75.2	40.69
80%	113.2	75.44	53%	101.2	66.69	26%	74.2	39.69
79%	112.8	75.17	52%	100.2	65.69	25%	73.2	38.69
78%	112.4	74.90	51%	99.2	64.69	24%	72.2	37.69
77%	112	74.63	50%	98.2	63.69	23%	71.2	36.69
76%	111.6	74.36	49%	97.2	62.69	22%	70.2	35.69
75%	111.2	74.09	48%	96.2	61.69	21%	69.2	34.69
74%	110.8	73.82	47%	95.2	60.69	20% 이하	68	34

<별첨3> 외국어능력 환산표

등급	TOEFL (iBT)	TEPS	IELTS (Academic Module)	반영 점수 (100점)
1	115점 이상	900점 이상	8.5등급 이상	98점
2	113 이상 ~ 115 미만	870 이상 ~ 900 미만	8.0	97.5점
3	111 이상 ~ 113 미만	852 이상 ~ 870 미만	7.5	97점
4	108 이상 ~ 111 미만	806 이상 ~ 852 미만	7.0	96.5점
5	105 이상 ~ 108 미만	768 이상 ~ 806 미만	6.5	96점
6	101 이상 ~ 105 미만	730 이상 ~ 768 미만	N	95.5점
7	99 이상 ~ 101 미만	700 이상 ~ 730 미만	6.0	95점
8	96 이상 ~ 99 미만	673 이상 ~ 700 미만	N	94.5점
9	93 이상 ~ 96 미만	650 이상 ~ 673 미만	N	94점
10	90 이상 ~ 93 미만	627 이상 ~ 650 미만	N	93점

* 제2외국어 가산점 인정 등급

독일어 ZD Testdaf	프랑스어 DELF	스페인어 DELE	러시아어 TORFL	중국어 HSK	일본어 JLPT
C1, C2 Testdaf의 경우 각 영역 4등급 이상 또는 전영역 합계 16등급 이상			3, 4단계	新6급 총점 180점 이상	N1등급

* 위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능력'에 2점 가점 부여